

## 2011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영정



### 2011년

1월부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「석면피해구제제도」가 새롭게 시행되며,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.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이 확대되며 공공하·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 시설(1~2종)을 대상으로 「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」이 새롭게 적용되어진다.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문과 관리업체에 대하여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새롭게 시행된다. 2011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영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&lt;편집부&gt;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시행일)	관계부서
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	* 신규	* 환경성 석면노출로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비, 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	석면피해구제법 ('11. 1. 1)	환경부 생활환경과 02-2110-7689
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% 감면	*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(45~150원)	*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 억 미만 제조업체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 (22.5~75원) ▶ 폐기물부담금의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에 대한 부담 완화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1. 1. 1 ~ '13. 12. 31)	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2-2110-6916
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	* 종량제봉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차치 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 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 대책 강구	*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·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-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(특허 등)을 사용 -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 -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 • 일련번호, 제작일, 제작시간을 봉투 결면에 표시 ▶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	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('11. 1. 1)	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-2110-6929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시행일)	관계부서
분리배출 표시 도안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분리배출 표시 도안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종(종이, 종이팩, 유리, 캔류 2종, 플라스틱류 7종)</li> <li>- 한글, 영문 혼용</li> <li>- 도안색상 없음</li> <li>- 표시위치 정면, 측면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분리배출 표시 도안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7종(종이, 종이팩, 유리, 캔류 1종, 플라스틱류 3종)</li> <li>- 한글표시(세부자질만 명문)</li> <li>- 컬러인쇄시 도안 색상 도입(7종)</li> <li>- 표시위치 정면, 측면 또는 바코드 상·하·좌·우</li> </ul> </li> </ul> <p>▶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</p>	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('11. 1. 1)	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-2110-6949
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시설,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적용대상 면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시설,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적용 대상은 연면적 860m<sup>2</sup> 이상의 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시설,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적용대상 연면적 기준이 860m<sup>2</sup> 이상에서 430m<sup>2</sup> 이상으로 확대</li> </ul>	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[대통령령 제20475 호, 2007.12.28] (2011. 1. 1)	환경부 생활환경과 02-2110-6909
제작·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	* 신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관차, 디젤동차 등 제작·수입 철도차량에 대하여 정차소음, 주행소음 권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</li> </ul>	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[환경부고시 2010-73호] (2010. 7. 1)  2011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시행 (2011. 1. 1)	환경부 생활환경과 02-2110-6812
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먹는 물 수질기준 (수돗물 57개 항목) 증·납, 비소, 망간 항목 기준 강화,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항목 조정, 1,4-다이옥산 항목 신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신설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납) "0.05mg/L"에서 "0.01mg/L"로 강화</li> <li>- (비소) "0.05mg/L"에서 "0.01mg/L" (샘물의 경우 0.05mg/L)로 강화</li> <li>- (망간) 수돗물에 한하여 "0.3mg/L(샘물 미적용)"에서 "0.05mg/L(샘물 미적용)"로 강화</li> <li>- (6가크롬) "6가크롬은 "크롬"으로 항목이 조정되고, 기준은 0.05mg/L로 현행과 동일</li> <li>- (1,4-다이옥산) 새로이 신설(0.05mg/L)</li> </ul> </li> </ul>	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('11. 1. 1)	환경부 수도정책과 02-2110-6875
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·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업 규모·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대기업, 중소기업 평가기준 차별화</li> <li>* 전기·전자, 기계·자동차, 금융, 숙박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차별화된 평가기준 적용(나머지 업종에 대하여는 공통기준 적용)</li> </ul>	녹색기업지정 제도운영규정 ('11. 4.)	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02-2110-6681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시행일)	관계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	<p>* 10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※ 규제시행 취급제한 물질 목록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연번</th> <th>취급제한물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</td><td>말리카이트 그린 염류</td></tr> <tr><td>2</td><td>메틸브로마이드</td></tr> <tr><td>3</td><td>사염화탄소</td></tr> <tr><td>4</td><td>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</td></tr> <tr><td>5</td><td>폼알데하이드</td></tr> <tr><td>6</td><td>노닐페놀</td></tr> <tr><td>7</td><td>백식면</td></tr> <tr><td>8</td><td>트리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9</td><td>테트라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10</td><td>납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* 12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- '11. 6. 1부터 납, 카드뮴, 크로뮴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행 ※ 납의 경우 취급제한 범위 확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연번</th> <th>취급제한물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</td><td>말리카이트 그린 염류</td></tr> <tr><td>2</td><td>메틸브로마이드</td></tr> <tr><td>3</td><td>사염화탄소</td></tr> <tr><td>4</td><td>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</td></tr> <tr><td>5</td><td>폼알데하이드</td></tr> <tr><td>6</td><td>노닐페놀</td></tr> <tr><td>7</td><td>백식면</td></tr> <tr><td>8</td><td>트리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9</td><td>테트라클로로에틸렌</td></tr> <tr><td>10</td><td>납</td></tr> <tr><td>11</td><td>카드뮴</td></tr> <tr><td>12</td><td>크로뮴(6+) 화합물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▶ 취급제한 ·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</p>	연번	취급제한물질	1	말리카이트 그린 염류	2	메틸브로마이드	3	사염화탄소	4	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	5	폼알데하이드	6	노닐페놀	7	백식면	8	트리클로로에틸렌	9	테트라클로로에틸렌	10	납	연번	취급제한물질	1	말리카이트 그린 염류	2	메틸브로마이드	3	사염화탄소	4	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	5	폼알데하이드	6	노닐페놀	7	백식면	8	트리클로로에틸렌	9	테트라클로로에틸렌	10	납	11	카드뮴	12	크로뮴(6+) 화합물	취급제한 ·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('11. 6. 1)		환경부 화학물질과 02-2110-7962
연번	취급제한물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말리카이트 그린 염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메틸브로마이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사염화탄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폼알데하이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노닐페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백식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트리클로로에틸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	테트라클로로에틸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	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번	취급제한물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말리카이트 그린 염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메틸브로마이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사염화탄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폼알데하이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노닐페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백식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트리클로로에틸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	테트라클로로에틸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	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	카드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	크로뮴(6+) 화합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	<p>* BOD 등 이화학 적인 항목에 대해 서민 방류수수질 기준 및 개별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·관리</p> <p>* 미지의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폐수 통합독성을 살아 있는 생물체인 물벼룩으로 시험분석하는 "생태독성(TU)" 기준을 도입 설정·관리</p> <p>▶ 생태독성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biowet.or.kr">www.biowet.or.kr</a>)</p>		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('11. 1. 1)	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2-2110-6846 생활하수과 02-2110-68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단계 총량제부터 종인 관대상 물질에 포함	<p>* 1단계 총량제에서는 ('04~'10) 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BOD로 한정</p> <p>* 2단계('11~'15) 총량제 부터는 총인(T-P)을 추가하여 관리</p>		3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('11. 1. 1)	환경부 유역총량과 02-2110-764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	* 신규	<p>*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</p> <p>▶ 공공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(환경부장관 고시)</p>	자단소 녹색성장 기본법 ('10. 4. 14) 시행('11. 1월)	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02-3679-50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	* 신규	<p>* 관리업체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·관리</p> <p>▶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(환경부장관 고시)</p>	자단소 녹색성장 기본법 ('10. 4. 14) 시행('11. 1월)	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02-3679-50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시행일)	관계부서
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른 악취 배출원 관리강화	* 신설	*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		
	* 신설	* 악취관리지역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해제		
	* 신설	* 악취관리지역 외에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	악취방지법 ('11. 2. 5)	환경부 대기관리과 02-2110-6790
	* 신설	*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할 수 있다		
	* 신설	* 공공악취처리시설의 관리 및 악취배출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5년마다 기술진단 실시		
	*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	*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 면제		
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	* 신규	*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 기준 적합여부를 인증 받아야 함	수도법 ('11. 5. 26)	환경부 수도정책과 02-2110-7662
법령위반업체 공표의무화 신설		* 시·도지사가 부적합 제품(먹는샘물 등)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회수·폐기를 의무적으로 명령하도록 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	먹는물관리법 ('11. 3. 23)	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-2110-7686
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 허용	* 공원 자연환경지구내에 숙박시설 설치 금지	* 「자연공원법 시행령」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고시(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 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 고시 제2010-156호)에 따라 입지적정성 평가를 받아 숙박시설 설치 가능	공원자연환경 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('10. 11. 17)	환경부 자연자원과 02-2110-6761